##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95

발의연월일: 2025. 4. 4.

발 의 자:민형배·김문수·장경태

김재원 · 박수현 · 황운하

안도걸 • 이광희 • 주철현

오세희 • 김 윤 • 김영배

조계원 • 박지원 • 신영대

소병훈 의원(16인)

#### 제안이유

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 방조, 선동한 반헌법행위자를 처벌하고,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재발을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는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 등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내란을 옹호하거나 부추기는 반헌법행위 정당화 시도에 대한 명확한 처별 규정도 없습니다.

이에 특별법 제정으로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 절차, 조사 기간을 규정하 고자 합니다.

또한, 청문회 출석 거부 및 반헌법행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반헌법행위 조사에 대한 국가기관 협조를 규정 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 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하는 등의 반헌법행위와 관련하여 그 진상을 밝히고 그를 주도하거나 가담·방조·선동한 자를 처벌하여 향후 헌정질서의 수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에 대하여 정함 (안 제5조 및 제7조).
- 라.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사무처에 대하여 정함(안 제10조).
- 마.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의 방법 등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 4조까지 및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 바.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업무에 대한 국가기관등의 협조 의무를 정함(안 제23조)
- 사. 청문회 출석 거부 및 반헌법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안 제25조 및 제26조).

#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훼손하려는 반헌법행위와 관련하여 그 진상을 밝히고 그를 주도하거나 가담・방조・선동한 자를 처벌하여 향후 헌정질서의 수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반헌법행위"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등의 내란행위 및 이를 주도·가담·방조·선동한 행위를 말한다.
  - 2. "반헌법행위자"란 제1호에 따른 반헌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 방조·선동한 자를 말한다.
  - 3.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란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및 헌정질서의 수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독립적 조사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반헌법행위와 관련된 진상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장 반헌법 • 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 제4조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12.3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의 책임을 규명하며 재발방지 및 헌정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장 직속으로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간 활동하며, 필요 시 국회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활동기간 종료 후 보고서나 백서의 작성 및 발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국회, 정당,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⑤ 임기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국회의장은 국회, 정당,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 야 한다.
- 제7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와 기록 등 반헌법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 2. 반헌법행위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의 현황에 대한 조사 및 방지방안 모색
  - 3. 반헌법행위 피해자의 진술 청취 및 보호 대책 마련
  - 4. 법적 처벌 및 배상 방안에 관한 연구
  - 5. 내란의 재발방지와 헌정수호를 위한 방안 연구
  - 6.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제9조 (의사진행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사무처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30명 이내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임명한다.
  -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⑥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15일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국가기관등은 위원장의 파견 철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제1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정원은 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국가기관등이 파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의 수와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3장 조사

- 제12조(진상규명조사) 위원회는 제7조의 직무와 관련한 진상규명 조사 (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제13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반헌법행위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 6. 반헌법행위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실지조사
- ② 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반헌법행위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 ④ 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

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4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 ④ 동행명령장은 국회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동행 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 제15조(수사)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가수사본부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과 관련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수사를 하여야 한다.
  - ④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수 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①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 제17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 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 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 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감 정인·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9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로부터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하다.
- 제20조(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 제21조(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증인·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 ③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아니한다.
- 제22조(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반헌법행위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보칙

- 제23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24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장 벌칙

-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

한 사람

- 2.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하 감정인
- 4.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 · 감정인
- 5.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 한 자
- ② 제24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반헌법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반헌법행위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신문, 잡지, 방송, 그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 게시 또는 상영
  -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